

대학원장학금지급에 관한규정

[2018.11.2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 대학원, 교육대학원, 융복합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을 포함하며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세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18, 2012.10.09, 2014.10.15, 2017.12..21>

[개정 2017.12.21][개정 2017.12.21]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선발과 장학금 지급(학비감면포함)에 관하여 법령이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학금 지급결정) ①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계획

2. 장학금 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종류 및 대상) 본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2.01.26, 2013.01.02, 2013.10.11, 2016.02.12, 2017.12.21, 2018.09.17, 2018.11.27> [개정 2018.11.27][개정 2018.11.27]

제5조(선발기준)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11.18, 2011.3.1, 2011.7.4, 2013.12.24, 2018.09.17>

1. 장학금은 소정기간내에 등록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장학생은 직전학기에 과목낙제(선이수과목 포함) 없이 6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 5, 6학기 차, 특별장학금,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3. 선발대상자는 동일점수일 경우 장학금 수혜경력이 없는 자, 신청학점수가 많은 자, 재학학기가 낮은 자, 연장자 순으로 선발한다.

4. 해당 증빙서류를 갖춘 자

5.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될 수 없으나 봉사장학, 근로장학, 학술활동장학(학술지제재, 논문발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다. 다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지제재장학금, 학술활동장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9.17][개정 2018.09.17]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일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08.16>

1. 휴학자

2. 학칙을 위배하였거나 교학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해당 대학원장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

5. 국제대학원 외국인 신.편입생 및 재학생 [개정 2017.08.16][개정 2017.08.16]

제7조(교외 장학생 추천) 외부 독지가나 단체에서 기탁한 장학금의 장학생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각 기탁자 또는 단체에서 수혜 학과를 지정하여 추천의뢰할 경우에는 당해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

한다.

2. 각 기탁자가 수혜대상자를 지명하여 추천의뢰서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천한다.
3. 각 단체에서 수혜대상 또는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뜻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이 지정하거나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지급방법) 장학금은 학비감면 형식으로 장학금액을 현금 대체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기 타)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5) 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교육인적자원부 200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결과 폐지된 사회복지대학원은 당해 대학원생이 재학중일때까지만 존립한다.
- (6) 이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0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7)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개정규정은 2004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개정규정은 2004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3)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14) 이 개정규정은 2005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15)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16) (경과조치) 제4조 <별표 1> 대학원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은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17)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8)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19) 이 규정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0)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4조 '관·학협약기관 장학금'은 2011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이전 입학자는 예외로 한다.
- (21) 이 규정은 2011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되 201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2)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 (23)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 (24) 이 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4조 대학원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26) 이 규정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7)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28) 제5조 (선발기준) 5호는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9) 1.(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의 부동산행정대학원이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따라 2014학년도 이전 재학생들의 대학원 명칭도 변경된 대학원으로 적용한다.
- (30) 이 규정은 2016년 2월 12일로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31) 이 규정은 2017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32)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33) 1.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2018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자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하며 대학원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중 성적장학금 지급기준인 재학생 수는 2018학년도 1학기 이전 재학생수를 적용한다.
- (34)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8.06.23, 2008.09.01, 2009.11.18, 2010.10.4, 2011.3.1, 2011.7.4, 2011.12.2, 2012.10.09, 2013.01.02., 2013.10.11., 2016.02.12., 2017.12.21., 2018.09.17, 2018.11.27>

□ 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 종류	구분	수 혜 자 격	지급액	
학술활동 <신설>	전체대학원	학술지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SSCI, A&HCI 등 국제(공인) 학술지에 논문을 최초 게재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n으로 한다)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SSCI A&HCI 등 국제(공인) 학술지에 논문을 2회 이상 게재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n으로 한다) 	50만원
		논문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소속 학과(전공) 관련 학술대회에 한하며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n으로 한다) 	100만원
			30만원	
본교 출신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출신자(학부,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강남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취득(예정)자) 	입학금전액, 수업료의 40%	
공무원·교사· 군인·교직원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공무원, 교사, 군·경찰로 재직 중인 자 - 교사의 범위: 자격증 소지자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시설에 교사로 재직 중인 자 .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수업료의 40%	
군위탁생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위탁생으로 입학한 자 	수업료의 50%	
목회자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사, 전도사, 파송선교사로 재직 중인 자 	수업료의 40%	
사회복지사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자로 장학금 신청일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수업료의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의 30%	
자격증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재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수업료의 30%	
보건의료기관재직자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인 자 	수업료의 30%	
평생교육기관재직자	특수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자 	수업료의 30%	
산업체근무자	특수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에 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 사업주 포함 	수업료의 30%	
관·학협약기관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학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인 자 	수업료의 40%	
교육 및 학술교류 협약기관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한 기관 졸업자 	수업료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 협약기관에 재직 중인 자 	수업료의 30%	
본교 교직원 및 가족	특수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교직원 및 강남학원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수업료의 50%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교직원 및 강남학원 임직원 직계자녀와 배우자 		
가족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존·비속·형제·자매) 2인 이상 본 대학원에 동시에 등록한 경우 원생 1인에게 지급 	수업료의 40%	
외국인 학생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해외교포 포함)으로 본교 출신자. 	입학금 전액, 수업료의 40% 및 기숙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해외교포 포함)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예정)자 	수업료의 40% 및 기숙사비	
근로조교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각 단과대학, 연구소 및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수업료의 40%	
국가고시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 중 국가고시(행정, 입법, 기술) 및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 (단, 1차 합격자는 유효기간동안, 최종합격자는 졸업 시까지 지급) 	수업료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 전 국가고시(사법, 행정, 외무, 입법, 기술) 및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의사, 변리사, 기술사,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 	수업료의 40%	
봉사	전체대학원	학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후보 이상의 전문학회 임원 및 간사로 학회활동에 기여하고 있는자 중 주임교수나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의 20%
		사회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 학교, 종교기관, 법인 이상의 사회단체 등의 기관에서 4개월 60시간(월평균 15시간 이상) 이상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자 중 주임교수 혹은 대학원장이 봉사활동이 학생의 학업 내용과 관련 되었다고 판단되어 추천이 된 자 	수업료의 20%
		학생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원우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회장, 부회장, 총무 중 1명) 	수업료의 35%
공로	전체대학원	입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 정부, 전문학회가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자 	수업료의 20%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총장, 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표창을 수여 받은 자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만원 이상의 대학발전기금을 제공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자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장이나 총장에 의해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추천된 자 	
특별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 또는 대학원장이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일정액	
외부	전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독지가나 단체에서 장학금을 기탁한 목적에 따라 선발된 자 	일정액	

※ 대학원장학금지급에 관한규정 제5조(선발기준) ②항 2호 장학생은 직전학기에 과목낙제(선이수과목 포함)없이 6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 5, 6학기 차, 특별장학금, 외부장학금은 예외(성적장학금은 해당 없음)로 한다.